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3. 7. 30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7월 23일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3년 7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2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3. 7. 30)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과장 이형상)

가. 제안이유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융자신청에 따른 추천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시 거주지 동의 새마을지도자, 통장의 추천절차를 생략하고 거주지 동의 동장 추천만으로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일시적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으로서 융자금 신청시에 관할 동의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 그리고 동장의 추천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장 추천서 하나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불편과 애

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현택 위원	영세민 현황과 지금까지 융자금 대출 및 회수내역은?	융자지원 대상은 거택, 자활, 의료 부조대상자로 하고 '93년 사업계획은 163,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7월 현재 20건에 92,000천원을 융자
장창조 위원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로 거주지 동장만의 추천으로 인하여 융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편향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융자신청절차 등 영세민에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융자신청서가 접수되면 생활상태, 가족사항, 재산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를 엄정히 선별하여 융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음. 반회보, 자생조직을 통한 교육, 회의시를 활용하여 연초에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김성엽 위원	융자금이 너무 적어 사업자금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금을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융자금 지급은 보사부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융자금을 인상할 경우 회수시 문제점 등의 애로가 있음. 추후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